

case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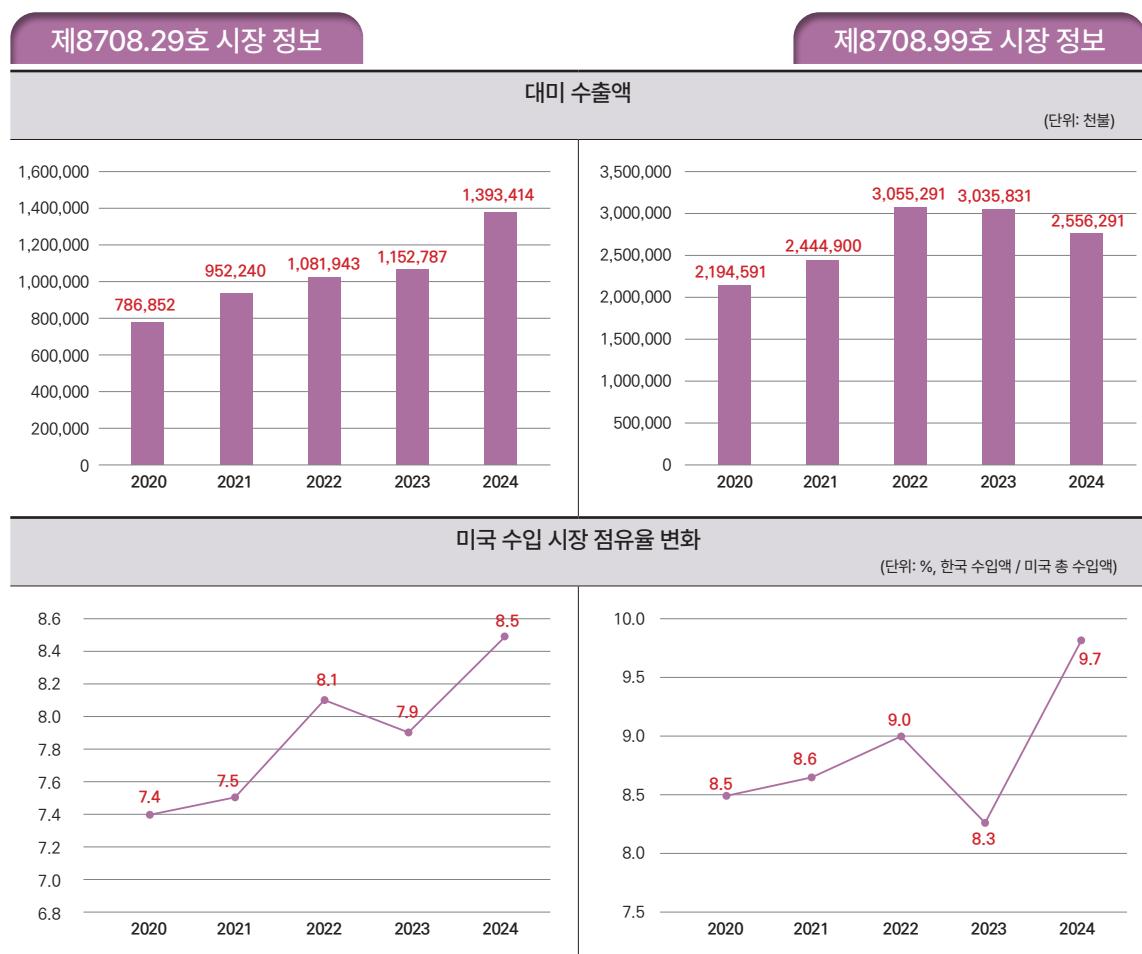
자동차용 선쉐이드 & 시트커버

요약

| | |
|---------|--|
| 사례명 | 자동차용 선쉐이드 & 시트커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|
| 사례번호 | NY N344131 (2024.12.19.) |
| 사실관계 | <p>선쉐이드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과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를 함께 적층한 후, 절단, 봉제,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 가림막용 선쉐이드 생산</p> <p>시트커버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산 품을 함께 적층한 후, 절단, 봉제,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시트커버 생산</p> |
| 쟁점 및 판정 | <p>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,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,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쉐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</p> |
| 근거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 |

I 품목개요

| 품목정보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HS Code | 제8708.29호 및 제8708.99호 | |
| 세율 | 한국 기본세율 | 8% |
| | 미국 기본세율 | 0% or 2.5% |
| | 한-미 FTA 협정세율 | 0% |
| 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 1.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.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%, 공제법의 경우 55%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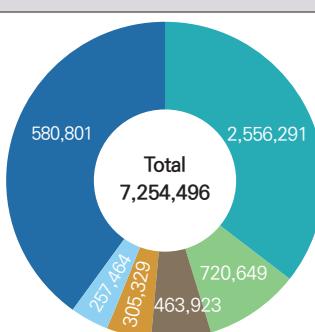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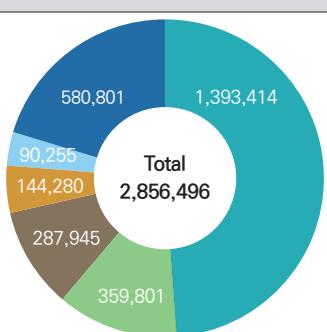
❖ 자료: K-stat

제8708.29호 시장 정보

제8708.99호 시장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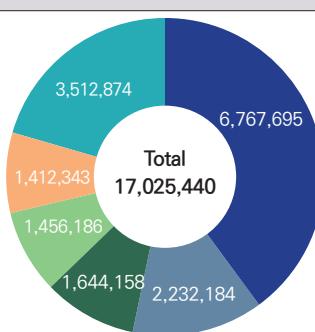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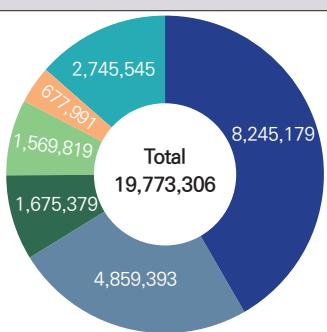
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

(단위: 천불)



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

(단위: 천불)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자동차용 선쉐이드 & 시트커버]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44131 (2024.12.19.)

사실관계

요청자 Higher Technology (Cambodia) Co., Ltd.

| | | |
|----|-----------|--|
| 제품 | 제품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쉐이드 (부품 번호: B01DH3687001.4)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(부품 번호: B01SH3668001) |
| | 구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쉐이드: 알루미늄 필름, 플라스틱 입자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: 폼, 직물 |
| |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외선 차단용 및 시트 보호용 |
| | 완제품 HTSUS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쉐이드: 8708.29.5160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: 8708.99.8180 |

제조공정



01
중국산 알루미늄 필름
캄보디아로 수입



02
적층 공정
수행



03
절단 및 봉제



04
미국 수출

상세공정

선웨이드 상세 공정

1. 롤 형태의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을 캄보디아로 수입
2.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적층 공정 수행
3. 절단 및 봉제
4. 기타 공정(검사, 접기, 포장 등) 수행
5. 미국 수출



01
중국산 직물을
캄보디아로 수입



02
적층 공정
수행



03
절단 및 봉제



04
미국 수출

상세공정

시트커버 상세 공정

1.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
2. 캄보디아산 품과 함께 적층 공정 수행
3. 절단 및 봉제
4. 기타 공정(검사 및 포장) 수행
5.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.C.P.A. 267 (C.A.D. 98) (1940)

-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,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됨

판정 결과

- ▣ 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,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,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쉐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

결론

- ✓ 두 가지 물품 모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

(III) 시사점

- 필름, 직물 등의 원재료를 적층하고 절단 및 봉제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됨

(IV)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44131 (2024.12.19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44131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